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1  
홈 페이지 www.ghf.or.kr



# 경북행복 BRIEF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2025

Vol. 56

## 01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방안

강민정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배현지 | 국립경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혜남 |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02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식

남영우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박정민 | 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재경 |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

## 03 사회서비스 공공성, '일자리'와 '공공 공급'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김보영 |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방안

책임연구원 | 강민정(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배현지(국립경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혜남(대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1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

- 2023년 12월 기준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456개가 설치돼 있고,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0개소에 불과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43.2%에 해당하는 99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8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천시, 상주시, 울진군 등 세 곳에 설치되어 있음.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고급화 등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원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1)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해당 법령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력 및 시설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에 근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살펴보면, (광역시·도 차원의 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뿐임.
  - 시·군·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서울(서대문구, 구로구), 울산(북구), 경기(시흥시, 포천시, 평택시, 여주시, 용인시), 충북(제천시), 충남(아산시, 홍성군), 전북(익산시), 경북(김천시, 상주시, 울진군), 경남(밀양시), 강원(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임.
-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김천시(2022.11.17. 시행), 울진군(2023.5.1. 시행), 상주시(2023.7.12. 시행)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음.

### 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총 456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그 중 4.4%에 해당하는 20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112개, 부산과 인천 각 22개, 대구 20개, 대전 9개, 광주와 울산 각 7개, 세종 6개, 경기 145개, 경남 25개, 강원 17개, 충남, 전남, 경북 각 13개, 전북과 충북 각 9개, 제주 7개임.
  -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라남도가 5개, 강원특별자치도 4개, 경상북도가 3개이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는 각 2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1개씩 운영 중임.
  -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시는 비교적 산후조리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역은 산후조리원 수가 매우 부족함.

표 1.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산후조리원 수 (공공산후조리원)	456 (20)	112 (2)	22 (-)	20 (-)	22 (-)	7 (-)	9 (-)	7 (1)	6 (-)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	99	-	3	3	4	2	2	1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후조리원 수 (공공산후조리원)	145 (2)	17 (4)	9 (-)	13 (1)	9 (-)	13 (5)	13 (3)	25 (1)	7 (1)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	7	10	9	9	11	13	14	11	-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 9개 시도 20개소 운영(서울2, 울산1, 경기2, 강원4, 충남1, 전남5, 경북3, 경남1, 제주1)

※ 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 12. 기준)

###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

#### 1) 자료수집 방법

-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20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설립 현황, 인력 현황, 이용 현황,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대해 정보 공개 포털(<https://www.open.go.kr/com/main>)을 통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9월 4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이며, 청구 결과 20개 산후조리원에 모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7개 기관은 부분 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았음.

#### 2)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

#####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소 현황

- 전국 20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연도, 규모, 산모실 수, 2주 이용 금액, 운영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표 2.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소 현황(2024년 8월 기준)

지역	설립연도	연 면적(㎡)	산모실 수 (실)	2주 이용 금액(만원)	운영 방법	이용 금액 감면율(%) <sup>1)</sup>	연간 산모수 <sup>4)</sup>	인력수	
서울	서대문	2023	1,379	12	250	민간 위탁	50	177	26
	송파	2014	2,896	27	190	공공 위탁	30 <sup>2)</sup>	600+	34
경기	여주	2019	1,498	13	168	민간 위탁	50	246	19
	포천	2022	2,432	20	168	공공 위탁	50	240	29
울산	북구	2021	2,883	28	189	민간 위탁	50	544	25
충남	홍성	2022	580	8	182	공공 위탁	50	168	11
강원	양구	2020	825	8	180	민간 위탁	70	160	16
	삼척	2016	1880	13	180	직 영	70	217	13
	철원	2020	1,341	10	179	민간 위탁	70	201	17
	화천	2022	603	5	180	민간 위탁	100	117	14
경북	상주	2023	1,982	13	180	민간 위탁	50	216	20
	울진	2020	710	8	182	직 영	50	92	10
	김천	2022	1,432	12	168	공공 위탁	50	240	18
경남	밀양	2022	524	8	160	민간 위탁	70	148	13
전남	순천	2022	197	10	154	민간 위탁	70	156	13
	해남	2015	494	10	154	민간 위탁	70	190	11
	강진	2018	616	10	154	공공 위탁	70	204	12
	완도	2019	594	10	154	민간 위탁	70	112	11
	나주	2020	797	16	154	민간 위탁	70	366	15
제주	서귀포	2013	548	11	154	공공 위탁	60 <sup>3)</sup>	174	17
평균		1,211	13	174	-		1	-	

주 1) 이용금액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장애인·다문화, 다자녀·다태아 등

2) 서대문공공산후조리원 : 장애인·다문화 감면율 20%

3)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 다자녀·다태아 둘째부터 70%

4) 연간 이용자 수는 2023년 기준이며, 서대문, 상주시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제출하여 1년 단위로 환산한 값임.

+ 해당 자치구에서 비공개로 통지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전기간행물]을 참조한 연평균 이용자 수임.

###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직종별 월 급여 수준

- 인건비 현황을 제출한 기관은 10개 기관이며, 인력의 경력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하어 직종별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였고, 월 급여에는 4대 보험료, 수당, 퇴직적립금 등이 모두 포함됨.
- 관리책임자의 월평균 급여는 5,507,758원 수준이었고, 민간 위탁은 대부분 겸직 근무로 겸직에 대한 급여 책정 성격이므로 민간 위탁의 월평균 급여가 공공 위탁보다 적은 것으로 보임.
- 간호사의 월평균 급여는 3,265,571원, 간호조무사는 2,928,815원, 조리원과 미화원은 각각 2,545,695원, 2,140,008원이었음.

표 3. 공공산후조리원 직종별 월급여 수준(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월평균 급여			
	전체	공공 위탁	민간 위탁	공공-민간
관리책임자	5,507,758	6,635,740	4,605,372	2,030,368
간호사	3,218,625	3,946,797	3,265,571	681,226
간호조무사	2,928,815	3,289,989	2,780,841	509,148
조리원	2,545,695	2,595,920	2,518,550	77,370
미화원	2,140,008	2,268,859	2,152,837	116,022
기타	2,551,952	2,305,906	2,638,520	-332,614

###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입과 지출 현황

- 수입금의 분석은 자료를 제출한 9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과 수입금의 합을 수입으로 보고 연간 이용 산모 수 1인당 수입 규모를 분석하였음.
- 지출 항목은 소모품비, 관리운영비, 대행수수료, 기타(여비, 교통비, 교육비 등)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공공산후조리원마다 지출 목과 세목이 달라 제출한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2023년 전체 1년 경상비로 분석하였음.
- 재정수지 분석에 활용된 9개 공공산후조리원 중 3곳은 적자로 재정 지출이 더 컸으며, 나머지 6곳은 잉여금이 남아 재정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공공산후조리원 수입과 지출 현황(2023년)

(단위 : 천원, %)

지역	운영 방법	산모 실수	연간 이용자수	수입	지출			잉여금 수입-지출	
					소계	인건비/구성비	경상비/구성비		
울산	북구	민간	28	544	1,939,226	1,899,676	1,146,339 60.3%	753,337 39.7%	39,550
충남	홍성	공공	8	168	1,085,198	1,085,196	862,420 79.5%	222,776 20.5%	2
강원	양구	민간	8	160	975,999	882,148	629,372 71.3%	252,776 28.7%	93,851
강원	삼척	직영	13	217	564,223	808,435	649,245 80.3%	159,190 19.7%	△244,212
강원	화천	민간	5	117	853,776	717,015	612,815 85.5%	104,200 14.5%	136,761
경북	울진	직영	8	92	794,720	662,082	514,299 77.7%	147,783 22.3%	132,638
강원	철원	민간	12	240	1,160,287	987,732	732,317 74.1%	255,415 25.9%	172,555
전남	해남	민간	13	216 <sup>†</sup>	558,800	638,988	482,089 75.4%	156,899 24.6%	△80,188
경기	여주	민간	10	201	1,285,836	1,646,983	884,507 53.7%	762,476 46.3%	△361,147
평균			10	190	1,024,229	1,036,476	723,711 73.1%	312,761 26.9%	△12,243

### 3) 경북의 공공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방안 분석

#### ① 분석 방법

· 경상북도 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적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모실 수, 연간 이용자 수가 유사한 타 시도의 공공 산후조리원과 비교 분석하였음.

#### ② 인력 현황 및 평균 월 급여 비교

-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을 보면 경북 상주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 1인당 연간 산모 수는 평균 13.4명이었으며, 경북 상주는 10.8명으로 인력배치 수준이 높은 편이었음.
- 책정된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수당,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호사 월 급여의 경우 경북 김천이 277만 원으로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었고, 간호조무사 급여도 경북 김천이 241만 원 수준으로 낮았음.

표 5. 인력 현황 및 평균 월 급여 비교

지역	운영방법	연간산모수(A)	인력현황(명)		인력별 평균 월 급여 비교(천원)				
			계(B)	A/B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미화원
경기여주	민간위탁	246	19	12.9	6,390,100	3,868,360	3,162,700	2,782,200	2,879,200
강원삼척	직영	217	13	16.7	6,046,880	3,854,994	3,278,711	2,635,720	-
경북상주	민간위탁	216	20	10.8	-	-	-	-	-
경북김천	공공위탁	240	18	13.3	5,979,000	2,769,200	2,411,000	2,109,000	2,109,000

#### ③ 재정 지출 현황 및 보조금 현황

- 총재정 지출 규모는 각 산후조리원 별로 편차가 컸으며, 산모 1인당 총재정 지출은 경북 김천이 195만 원이었고, 강원 삼척의 76만 원보다 2배가량 높았음.
- 9개 산후조리원의 보조금 증감률은 경기 여주와 경북 울진, 충남 홍성은 증감이 없었고, 강원 화천은 3.2%, 울산 북구 4.5%, 강원 철원 4.7%로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강원 삼척과 전남 해남은 각각 21.5%, 24.4%로 증가폭이 컸음.

표 6. 재정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지역	연간 산모수(A)	소모품비/급식재료비	관리운영비	대행수수료	기타	계	산모 1인당 지출액
경기여주	246	134,150	377,832	-	-	511,982	2,081
강원삼척	217	59,000	106,000	-	-	165,000	760
경북김천	240	216,650	144,777	50,356	56,228	468,011	1,950
평균	234	136,600	209,536	50,356	56,228	381,664	1,597

표 7. 2023년, 2024년 정부 보조금(안)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울산 북구	충남 홍성	강원 양구	강원 삼척	경북 울진	경북 김천	경북 상주	강원 철원	전남 해남	강원 화천	경기 여주
2023년	1,053,874	900,000	889,746	501,153	688,000	-	-	994,219	284,944	853,776	963,000
2024년	1,100,872	900,000	958,000	609,000	688,000	1,400,000 <sup>1)</sup>	1,270,000	1,041,586	365,600	880,703	963,000
증감률	4.5	0.0	7.6	21.5	0	209,536		4.7	24.4	3.2	0

1) 경북 김천시에서 보조금은 비공개 결정으로 기사 검색을 통한 금액으로 정확한 예산(안)이 아님을 밝힘.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71>

#### 4) 소결 및 시사점

·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표 8>과 같음.

표 8.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방안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운영 형태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 운영 방식과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률과 효율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북 상주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13실의 산모실을 운영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연간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북 김천은 공공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동일 규모의 민간 위탁(경기 여주) 및 직영 운영(강원 삼척)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됨.
인력배치 및 인건비의 적정성	· 경북 상주가 10.8명으로 낮은 산모 1인당 인력 수를 기록하며 비교적 여유 있는 인력 운영을 보였음. · 경북 김천의 경우 평균 수준의 인력배치(13.3명)를 보였지만, 인건비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주요 인력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음. 이는 양질의 인력 유치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건비 조정 필요성을 시사함.
재정지출의 효율성	· 경북 김천의 총재정 지출은 평균 수준에 가까웠으나, 산모 1인당 지출액은 강원 삼척보다 2배 이상 높았음. 이는 경북 김천의 소모품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 점에 기인하며, 이러한 지출 항목에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다만, 김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모범 사례로 홍보되고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급식 수준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종합하면 수준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낮은 인건비와 높은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의 조율이 요구됨.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 정부 보조금 증감을 분석 결과, 경북 김천과 상주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 증가가 반영되었음. 특히, 물가상승률에 따른 보조금 증액 기준을 고려하여 경북 지역의 적정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4 FGI 결과

·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3곳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음.

표 9. FGI 결과 요약

구분	내용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차이점	·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소 가능 · 지역민이나 장애인, 유공자, 다문화 등 이용료 할인을 적용 · 민간은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은 부조가 목적임
해당 공공산후조리원 만의 차별성이나 우수한 점	· 의료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의료진 포진 및 응급실 접근성 높음 · 소아과 전문의 주 2회 회진으로 신생아 건강 관리 · 지역에 유일한 산후조리원이라서 비교 대상이 없지만 식사는 최고급으로 제공됨 · 외부 기관에서 산모 대상 프로그램비 지원 · 산후조리원 위탁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대부분 해당 조리원 이용
해당 지역의 산모나 주민들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 지역 산모들이 대부분 입소를 원하므로 모집 기간에 경쟁 치열 · 타 지역 산후조리원으로 가던 산모들이 몇 달 전부터 예비 등록을 할 정도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음 · 산후조리원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상당히 높음 · 몇몇 산모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역할을 잘못 인식하고 있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어려운 점	· 운영 측면보다는 입소 산모의 성향과 요구로 인해 업무가 어려움 · 산모들이 바라보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어려움 · 산후조리원 운영 지침에 따른 인력구성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음 · 보조금 삭감 가능성에 따른 우려 및 불안감 ·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및 인력 등의 인프라 부족

표 9. FGI 결과 요약(계속)

구분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그 이유	·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일수록 필수불가결한 기관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 가능하므로 꼭 필요함 · 우후죽순으로 개설되는 것은 문제지만 산모에게는 반드시 필요함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 개선할 점	· 공공산후조리원 인건비 상승분만큼의 예산 확보 필요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좌우되므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보건소에서 산전 관리 등록한 산모 대상 출산 및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 교육 실시 필요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시 관내 분만을 고려하여 추가 개설 및 신설 논의 · 지역의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와 의료기관 수 등을 토대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설계획 수립 필요 · 권역별 개설보다는 지리적 접근성 있는 시·군끼리 묶어서 매칭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할 것을 제안

## 5 정책 제언

-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3곳의 적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음.

표 10. 분석 결과에 따른 적정 운영 방안

구분	분석 결과	적정 운영 방안
경북 김천	· 공공 위탁 운영 체계로 경제적이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낮은 인건비로 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를 지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여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경북 상주	· 민간 위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작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운영 효율성 면에서 검토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	· 민간 위탁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모품비 및 관리운영비 등 적정 수준에서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경북 울진	· 소규모 시설로 직영 운영 중이나, 낮은 이용률로 인해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소규모 시설 특성을 반영해 1인당 지출액을 낮출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거나,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유연한 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울진의 경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곳은 대규모 이용자를 고려해 산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예: 심리상담, 신생아 돌봄 교육)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 산모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 공공의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울진의 경우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 산후 관리 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간 운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예산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모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개선점을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 내 보건소, 병원, 여성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 보건 복지 허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 참고문헌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2022).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김경례. (2016).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인문사회 21. 7(3), 785-804.

배현지·김진현. (2020).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에 관한 융합 연구: 편익-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2), 409-418.

보건복지부. 전국산후조리원 현황(2023.12.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2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0910](https://www.mohw.go.kr/board.es?mid=a12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0910)

이주연·조경옥·전희진·최지훈. (2023).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이해춘·안경애·김기덕·최원옥. (2019). 공공산후조리원의 공익적 편익가치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19(4), 277-28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방안(2024)'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페셜 코멘트 ·

## SPECIAL COMMENT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민'이라는 요소가 당연시되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른, 아이 따지지 말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개인 또는 민간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의 접근은 인구 감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역할과 책임 분담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나와 있듯이 신생아수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되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마련과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국가의 근본을 해하는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게 되길 바랍니다.

예천군 풍양면 행정복지센터 부면장 **우현속**

#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식

책임연구원 | 남영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박정민(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재경(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

## 1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

- 사회복지사의 법적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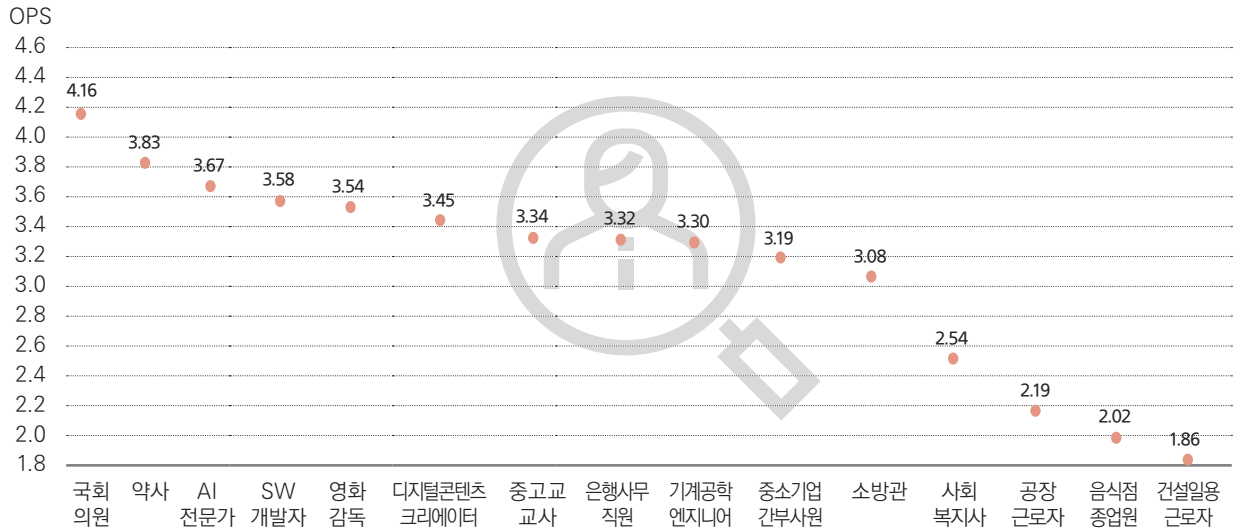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는 의사, 간호사와 같은 개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시설 조직의 필요에서 비롯된 전문직임.
- 사회복지사의 직업 지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처우개선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고용 종사자로서 공무원과 유사한 직종으로 대우받고 있음.
-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 수준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음.

- 김승보 외(2023)에 따르면 2023년 직종별 대표 직업 15개가 갖는 사회적 지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는 12위로 나타남.

그림 1. 한국인의 직업 위세 인식(2023년, 15개 직업 대상)



자료 : 김승보 외(2023)

-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종사자의 처우는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 저조한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야기하여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식을 파악하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음.

## 2 조사 방법 및 결과

### 1)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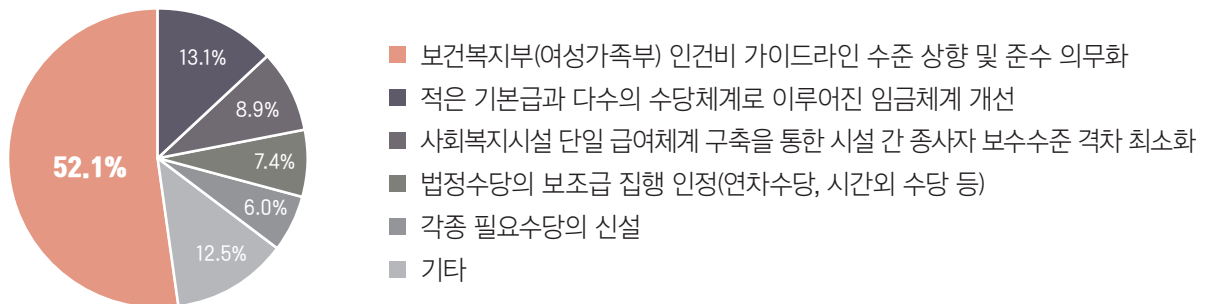
- 조사대상 :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200개소 종사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제외
- 기간 및 방법 : 2024년 9월 23일 ~ 2024년 10월 11일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자 특성 : 불성실 응답자 제외 282명 분석

## 2) 주요 결과

### (1)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사항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5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13.1%),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 간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8.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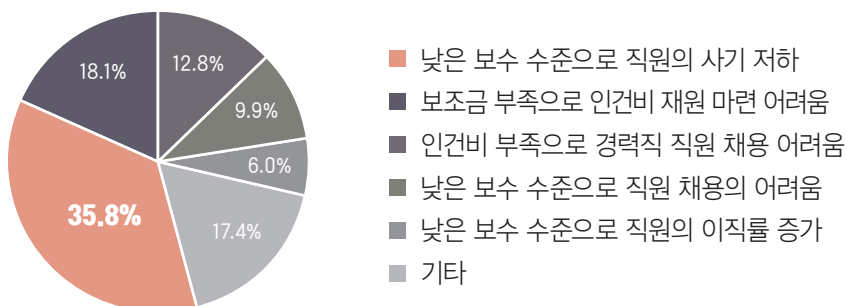
그림 2.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사항



### (2) 현 보수지원체제로 인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 어려움’(18.1%), ‘인건비 부족으로 경력직 직원 채용 어려움’(12.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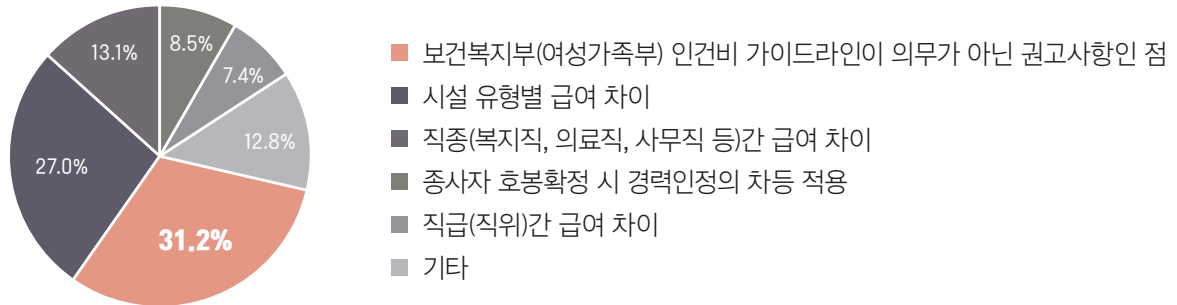
그림 3. 현 보수지원체제로 인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 (3) 현 인건비 가이드의 가장 심각한 문제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이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유형별 급여 차이’(27.0%), ‘직종(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등) 간 급여 차이’(13.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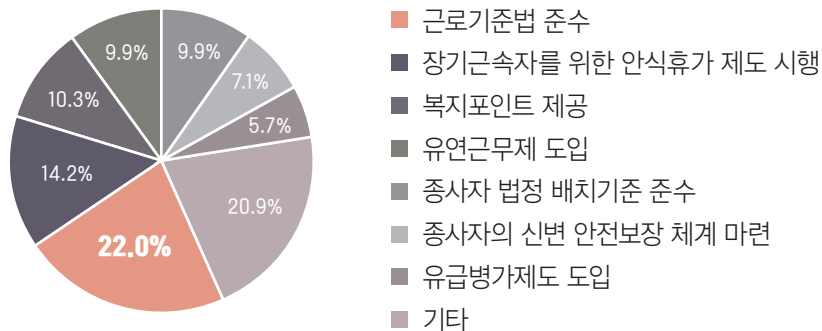
그림 4. 현 인건비 가이드의 가장 심각한 문제



## (4) 보수 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휴식, 재해보상 등) 준수'가 2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기근속자를 위한 안식휴가 제도 시행'(14.2%), '복지포인트 제공'(10.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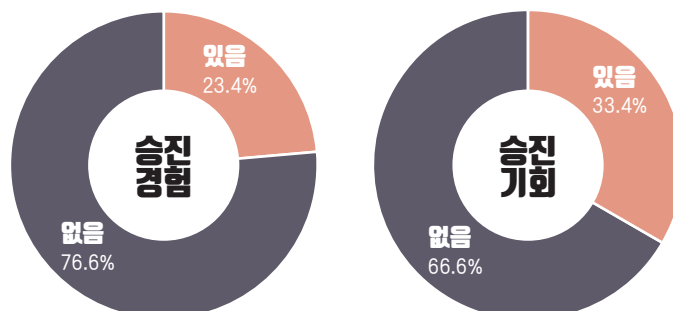
그림 5. 보수 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



## (5) 승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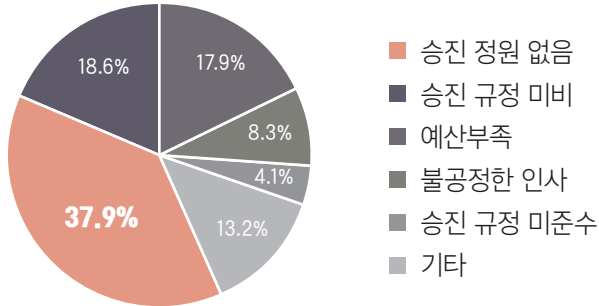
· 승진 경험 : 승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23.4%, 승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76.6%임.  
· 승진 기회 :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33.4%, 승진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66.6%임.

그림 6. 승진 경험과 기회



-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 '승진 정원 없음(승진대상자 적체)'이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승진 관련 규정 미비'(18.6%), '예산 부족'(17.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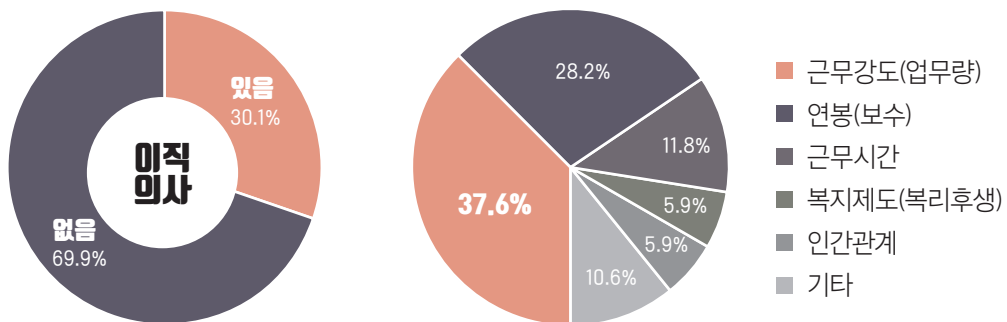
그림 7.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 (6) 이직에 대한 인식

- 이직 의사 :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30.1%, 이직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69.9%임.
- 이직 고려 이유 :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근무강도(업무량)'(37.6%), '연봉(보수)'(28.2%), '근무시간'(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이직 의사와 이유



### 3 개선 방안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고 수준을 현실화하여 종사자 간 급여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함.
- 시설 유형 및 직종별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더불어 유사 또는 관련 산업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기준 검토가 필요함.

표 1. 산업중분류별 월임금총액(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월임금총액
전체	4,266
농업, 임업 및 어업	3,539
광업	4,593
제조업	4,6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58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237
건설업	4,344
도매 및 소매업	4,277
운수 및 창고업	3,981
숙박 및 음식점업	2,578
정보통신업	5,105
금융 및 보험업	7,074
부동산업	3,2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7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471
교육 서비스업	3,7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39
보건업	4,289
사회복지 서비스업	1,9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3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91

자료 : 고용노동부(2023)

-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시설 유형 및 지역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한 보수지침 마련을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상북도 단일임금체계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김승보·황규희·문찬주·김민석·김선태·장홍근. (2023).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202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유형별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4)'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페셜 코멘트 ·

## SPECIAL COMMENT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다름에 대한 배척 등 최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투쟁이 아닌 공동체를 사냥하려는 각자도생의 동맹은 조금의 차이도 허락하지 않고 상대를 비인간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하여 무리 지어 함께 살아온 오랜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갈등과 대립, 분열과 소멸의 시대에 좋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인 사회복지현장도 인력 수급에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의 감소와 사회의 하층은 대우는 사회복지현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경상북도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자본의 시대에 부자가 되는 것을 뒤로 미룬 채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우리 사회는 합당한 존중과 대우가 따라야 한다. 자존심을 상실한 사회복지사에게 좋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성과의 기대는 부조리이다. 이 연구가 좋은 공동체를 향한 연대와 협력의 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김우찬**

# 사회서비스 공공성, '일자리'와 '공공 공급'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김보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2024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설립 5년 만에 결국 해산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 공공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총 83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조레 폐지를 통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었던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고, 적지 않은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비용 구조와 경직된 운영의 비판 속에서 이루어진 서사원의 폐지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단순히 하나의 공공기관 폐원을 넘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논의해 온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나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이라는 특정 수단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확대된 지 어언 1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그 공공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과 2026년으로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구호에 그치는 공공성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단편적인 정책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길을 묻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를 논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논의의 지난 한계를 되짚어보고,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 즉 주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중심의 책임 있는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길 잃은 공공성 논의 - ‘일자리’와 ‘공공 공급’ 프레임의 함정

###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치우친 사회서비스의 논의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논의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표, 특히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었다. 과거 사회서비스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영역으로 주목받으며, 일자리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주요 대책으로 거론되곤 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맞물려, 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비스 본질보다는 일자리 확대에 맞춰지는 경향을 낳았다. 많은 정책 보고서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유발 계수를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중심’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상당 부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 이용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나아가 개인의 필요에 맞는 포괄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구호의 그늘에 가려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사회서비스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좋은 노동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이 전도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은 후순위가 되었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모호해졌으며, 다양한 서비스 혁신은 외면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다른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자원 투입이 충분했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서비스 자체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확대된 결과이지, 고용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동원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이다.

### ‘공공 공급’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모델과 그 명확한 한계

문재인 정부 시기 야심 차게 추진되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이러한 ‘일자리’ 프레임에 더해 ‘공공 직접 공급’이라는 틀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시도였다. 이전 정부까지 사회서비스가 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었다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가치로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측면으로 축소되어 해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사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민간 공급 중심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종사자들에게는 직접 고용 형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공급 중심’의 접근 방식 역시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가’라는 단편적이고 협소한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는 점이다. 물론 민간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나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공공성 확보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은 공급 주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접근성, 질적 수준,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한 보장 수준, 그리고 서비스 전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과거 산업화 논리에 가려졌던 공적 서비스로서의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그 자리를 ‘일자리’가 대신하면서 공공성의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식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원칙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 각 기관의 현재 수입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공적 자원의 투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 원칙은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민간 서비스와 차별화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공급을 기피하는 필수 영역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민간기관과 유사한 시장 경쟁 논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공공 의료기관처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전제되지 않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라는 원칙은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난 ‘공공은 선(善)이고 민간은 악(惡)’이라는 단순하고 경직된 이분법적 시각은 기존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 온 수많은 민간 제공기관과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했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풀뿌리 조직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시도까지 평가절하되는 소외감을 주었다.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는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본질 -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재정립

### 공공성의 핵심은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서비스 보장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누가 서비스를 공급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다면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과거 가족 등 사적 영역에서 담당했던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모든 시민에게 공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양성욱·노현희, 2012). 즉, 사회서비스는 국가나 특정 사회 집단이 베푸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시민권의 하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로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가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 접근의 보편성 및 형평성이다. 소득 수준, 거주 지역(도시와 농어촌, 도서벽지 등), 장애 유무, 연령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기관의 물리적 존재를 넘어, 정보 접근성, 이용 절차의 간편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 능력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성을 의미한다. 둘째, 서비스 질의 적절성 및 포괄성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와 구체적인 생활 상황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며, 단편적이거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필요한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질적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계획에 따른 유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서

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인간 존엄성 보장이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 낙인, 비인격적인 대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서비스 계획, 제공,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감시, 그리고 평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가치들이 균형 있게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서비스의 진정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문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현실은 이러한 ‘권리 보장’ 중심의 공공성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개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돌봄의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책임성’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책임회피 구조이다. 대부분의 주요 돌봄 관련 급여(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 그리고 예산 통제하에 전국적으로 획일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돌봄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기 쉽다. 반대로 중앙정부에게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개인의 복잡다단한 돌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신속한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중앙집중적이고 경직된 돌봄 시스템은 결국 중앙과 지방 사이에 상호 책임을 떠넘기거나 방관하는 이중적 회피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특정 욕구나 대상의 문제를 온전히 포괄하기보다는 여러 제도로 나누고, 운영과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 중앙이든 지방이든 단일 주체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왔다.

둘째는 지역 차원에서의 수평적 책임회피 구조이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욕구조사와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실제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은 수많은 민간기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며, 그 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여러 기관과 사업으로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다. 장애인 돌봄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 그리고 담당 부서와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분절된 구조 하에서는 특정 주민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기존 제도의 경계선상에 놓여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된 어떤 주체도 그 문제에 대해 온전하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각 기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역할과 규정만을 따를 뿐, 주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이나 포괄적인 욕구 해결, 그리고 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책임회피 구조는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용자는 자신의 절박한 욕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미로처럼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일일

이 찾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각기 다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과감한 개혁 없이, 단순히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공공으로 일부 전환하거나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성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 분권화된 지역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

### 왜 지역 중심의 분권화인가? - 주민 기본권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의 최적 경로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특히 개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 되는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성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지역 중심의 분권화’를 통해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과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단순한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과 사회적 관계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공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개인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각 지역은 고유한 인구학적 특성(고령화율, 1인 가구 비율 등), 사회경제적 환경(도시와 농어촌, 소득 수준 등), 지리적 조건, 그리고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와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큰 틀에서의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내 다양한 특성과 격차(도농 간, 소득계층 간 등)를 면밀히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배분 전략과 서비스 인프라(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례관리 전문가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도 광역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이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광역 단위의 기획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소통하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실행 단위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가용 자원(공공, 민간, 비공식 자원 포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지역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기초자치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실제적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이기도 하다.

##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제언 : 주민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분권화된 지역 중심의 돌봄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축되어야 주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핵심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을 하달받아 집행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역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되는 과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통해 욕구가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재설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장애인 관련 단체, 학교 등 다양한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원스톱 해결 창구로서 기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주민 개개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설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실현하는 최일선 창구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돌봄 등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수많은 파편화된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내어 복잡한 자격조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신청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결국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직접 설계하며, 나아가 서비스 '신청'의 책임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서비스 신청 공공화'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지역사회 복지 담당자나 이웃 등을 통해 발굴된 잠재적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담당자는 직접 방문 조사를 하거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구체적인 욕구와 생활환경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들을 조합하고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꾸러미'를 설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지원하거나 대행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민간 자원과의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 역할 강화가 민간 영역을 배제하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지역 내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창의성, 현장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활용하며 지원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민간 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자율성을 가지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위탁이나 관리·감독 관계를 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분야별 민관협의체 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 자원 배분, 사업 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상호 학습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서비스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분권의 실현 조건 : 공적 책임성 구현의 토대 마련

물론, 이러한 지역 중심의 분권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적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행정 역량 부족, 충분하지 못한 재정 자립도, 그리고 분권화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우려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지적들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들이나 학계에서는 분권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과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계속 미룬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필요한 책임성과 역량을 갖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즉,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면 그때 가서 분권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권해야 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성이 구현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과거와 같이 획일적인 규제와 세세한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대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인 서비스 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서비스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스웨덴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지역에 방법론적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목표중심 정책틀(goal-oriented framework)'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최영준·김보영·김태일, 2018). 즉, 중앙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권과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서비스 보장성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또한 분권화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특정 사업별 간막이식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합적인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총액을 확대하고, 그 배분 기준에 있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인구 구조,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와 재정 여건을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을 상당 부분 경직되게 만드는 기초연금과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지고, 대신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일종의 '빅딜(Big Deal)'을 통해, 결과적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서비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 진정한 공공성,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를 향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논의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 직접 공급’이라는 특정 수단이나 제한된 프레임 넘어서, 모든 시민의 ‘서비스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표로 확고하게 회귀해야 한다. 공급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공공성’이라는 이름은 그저 공허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과거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겉으로는 지역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양한 현실론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속한 영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분절을 심화시키고 통합적 접근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때로는 기존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내세우거나, 기초자치단체의 현재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주저하게 만든다. 자신이 속한 특정 분야나 기관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기적인 통합과 효율적인 연계를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권리 보장’은 이러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지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주민 기본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사회서비스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정치적 구호, 혹은 중앙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에 따라 표류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개인적 상황에 놓여 있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용기 있게 확립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때이다.

겉보기뿐인 공공성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실질적인 힘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는 단지 하나의 정책 과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국가의 책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는 지역 중심의 책임 있는 돌봄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양성욱·노현희. (201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1-57.
- 최영준·김보영·김태일. (2018). 한국 사회서비스를 보는 새로운 시선: 바람직한 대안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387-407.



# 청렴(清廉) 소식지

| 경북행복재단 청렴이야기 제4호 |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등의 직무 관련자가 자신,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A)에게 그 가족(B)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그 사실을 공직자(A)가 인지한 경우, 해당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허가, 보조금 등의 지급·처분,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채용·평가,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등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6가지 의무

**Q** 사적이해관계자 가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단, ②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Q**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신고·회피 신청을 받는 소속기관장은 ①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②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③직무 재배정, ④전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한다면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선진복지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 경북행복재단 인권경영 헌장

## 경북행복재단 임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재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당사자, 도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지역, 학력, 나이,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연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부



#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경북형 사회통합 서비스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 기관



##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p>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li> <li>·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li> <li>·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li> </ul>	<p>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li> <li>· 컨설팅·평가인증</li> <li>·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ul>	<p>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li> <li>·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li> <li>·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li> </ul>	<p>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li> <li>·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li> <li>·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li> </ul>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APEC 2025  
K O R E A

#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북행복재단과 함께합니다.**

